

제주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가단564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13.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1/7지분에 관하여 2020.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소유였던 1/7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12. 8. 접수 제58583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판사 최석문

[별지]

목 록

1. 서귀포시 E 대 588㎡
2. 서귀포시 F 대 291.9㎡
3. 서귀포시 E, F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73㎡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3㎡
4. 서귀포시 E, F에 있는 G호
시멘트 벽돌조 스텔지붕 단층창고 49.5㎡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관리하는 회사로서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이 가지는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나. 피고는 C의 가족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로서 사해행위취소 목적의 당사자입니다.

2.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관계

[1차 양도인] 주식회사 H ⇒ [1차 양수인 겸 2차 양도인] I 주식회사 ⇒ [2차 양수인] 원고

위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06689 양수금 사건에서 지급명령(18,202,896원 및 그 중 7,730,198원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가. C의 사해행위

(1)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자 지분 1/7을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12. 8. 접수 제58583호로 2020. 12. 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허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

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보전채권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본 건의 채권 발생 이후 C은 2020. 12. 4. 증여를 원인으로 그의 유일한 잠재적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지는 C에 대한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C이 부담하던 채권으로서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바, C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만을 감안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C) 및 수익자의 악의

(1) C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더욱이, 위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C의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악의(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C이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마찬가지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C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재산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이 악의임은 달라지지 않으며, 피고가 C의 가족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까.

(4) 한편,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정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의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원상회복(원물반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20. 12. 4.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의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소유였던 1/7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12. 8. 접수 제58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7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소유였던 1/7지분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